

윤 리 강 령

더해든 주식회사

윤리강령

‘윤리와 도덕’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공정한 경쟁과 자유경쟁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이념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 발전한다.

따라서 더해든주식회사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정일자 : 2024 년 4 월 10 일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 1)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고객 가치 창조

-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2)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한다.

3. 정보제공

- 1) 고객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2) 경쟁사 상품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 없이 비교하지 않는다.

4. 고객과의 약속 이행

- 1)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항상 지킨다.
- 2) 전화응대, 금융서비스, 고객불만 등 영업 기본행위에 관한 고객과의 약속은 항상 지킨다.

5. 고객의 이익보호

- 1)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거나 고객이 알아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3) 고객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민원 및 분쟁처리

-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고객이 전화·방문 또는 문서로 제기한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함으로써 각종 민원이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주에 대한 책임

1. 주주 이익 보호

- 1)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 2)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 3)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4) 임직원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투명한 회계처리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나 제안·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 관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철저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제 3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사명의 완수

-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의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며, 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하게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 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 5) 수행하는 업무 및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6) 동료 및 관련부서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2. 자기계발

- 1) 21 세기에 걸 맞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2) 타성에 빠지는 것을 수치로 알고 항상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3. 공정한 직무수행

- 1) 모든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3)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대내외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시세조종행위,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 상호존중 및 차별금지

- 1)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학연·지연·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5.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금지한다.

- 1)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
- 2) 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6.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 1) 하위 직급자가 상사에게 선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2) 부서간에 선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물하는 것과 부서원들간의 생일선물·기념일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서원들의 가벼운 선물제공은 예외로 한다.

7. 회사재산의 보호

- 1)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유용, 횡령하는 등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업무 수행시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한다.
- 2) 사업문서, 업무방법 및 기타 회사의 재산, 지적재산권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제 3 자에게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8. 회사의 기밀정보 및 보안의 유지

- 1) 회사의 기밀정보 및 기록사항은 관계자 이외에는 반드시 적절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 3 자가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혹은 꾸준하게 얻고자 할 경우 관련자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자료의 기밀성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 3 자에게 개인적인 자료를 전달하거나 가공 혹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회사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 1) 직장에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비롯하여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3)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4)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5)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라는)을 하지 않는다.

10.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1) 인터넷이나 PC 통신,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불법 소프트웨어는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 4 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에 대한 윤리

1. 공정한 경쟁

- 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상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2) 해외연수 및 교육 등으로 해외에 주재할 경우 해당 지역의 법규 및 관습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 2)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2)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3)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모함,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4. 공정한 거래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① 제반 거래조건 변경시 해당 제휴회사와 사전 합의해 서명 절차를 밟는다.
 - ② 제휴업체에 대한 평가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으로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 2)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5. 적극적인 업무 응대

- 1) 직접 면담 또는 전화 응대시 친절한 태도와 언행으로 임한다.
- 2) 거래업체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내방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 3) 거래업체와의 업무 진행 중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업무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제 5 장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1. 윤리강령

- 1)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 2) 운용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3) 투자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며, 독립성과 객관성의 달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4) 자본시장의 건전 질서 및 투자자 재산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도 수행하지 않는다.
- 5) 투자자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정직성을 제고한다.
- 6) 소속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의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7)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2. 행위기준

- 1) 투자자 보호 (선관의무, 충실의무)
 - ①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통상 동일한 지위에 있는 신중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투자자에게 최선이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자산의 구성, 투자분석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를 수행한다.
 - ③ 오로지 투자자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투자자의 재산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배타적목적을 수행한다.
 - ④ 자신 또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 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 ⑥ 투자자에게 제공된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부합되도록 투자를 한다.
- 2) 전문성

- ① 자산운용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숙지를 위해 정진하고 그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② 적절한 조사, 연구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운용지시를 하며, 수행된 운용지시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록을 유지한다.
- ③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

3) 독립성

- ① 투자운용을 함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독립성과 객관성의 달성과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성실하고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투자분석 및 투자행위를 실행한다.
- ③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성과보수도 취득하지 않는다.

4) 불공정거래행위

- ① 부당한 목적을 위해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시장가격을 조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금융투자상품 및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결정을 한 후 또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관련 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제 3자에게 권유를 하지 않는다.
- ④ 투자자의 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 ⑤ 제 3자와 투자자의 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관계회사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단기매매하거나 관계회사가 인수하고 남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⑦ 인위적으로 형성된 불공정한 가격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지 않는다.
- ⑧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한 가격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지 않는다.
- ⑨ 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하거나 거래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법령준수

- ①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한다.

- ② 법규위반행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방조하지 않는다.
 - ③ 투자대상회사 및 임,직원 또는 기타 운용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 및 이익을 얻는 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및 기타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다.
- 6) 이해상충방지
-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부 준법감시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7)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 ①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회사 등과의 신임관계 또는 특별관계에 의해 입수한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제 3 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않는다.
 - ② 현재, 과거 및 미래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1. 합리적 사업전개

-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 2)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3)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국내외 협약 및 법규를 준수한다.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 1) 고용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교육·복지 사업 등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3) 성별·학벌·출신지역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4) 지역주민과 사회 각 계층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5) 자연자원의 보존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3. 정치관여 금지

- 1)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과 법률제정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3)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정당·정치위원회에게도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개개인들이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적 공헌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